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 및 신청 간주 등 지급 절차 정비〉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5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20.

(3) 회 부 일 : 2026. 4.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

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u>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같은 법</u> <u>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u>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¹⁾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 6급 장애등급 중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중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임.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 급여액(2026년)>

(단위: 원)

구분	18~64세 ^{주1)}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39,700원 ^{주2)}	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49,700원		- ^{주3)}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000원	429,700원		80,000원 ^{주4)}	80,000원
차상위 초과		30,000원	379,700원		50,000원	50,000원

- 주1)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선정기준액 초과분은 감액하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는 20%를 감액함)
주2)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주3)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80,000원 지급
주4)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는 특례가 적용되어 150,000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²⁾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

2)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임(참고자료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은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중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3)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으로,
- 이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6급 장애등급 중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중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을 의미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전 3급 중복장애 : 중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중전 1급, 2급, 3급)장애인과 동일하게 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 정도 체계에 맞게 법률상 수급 대상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전 3급 단일 장애인도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⁴⁾

- 2026년도 7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약 49만 명인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약 8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전체 장애인 중 34.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4)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연금액 차등)하는 내용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임(국정과제 79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

(단위: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현행(A)	503,563명	449,338명	496,450명	494,693명
(전체 장애인대비 비율)	(19.8%)	(19.6%)	(19.6%)	(19.5%)
개정안(B)	895,717명	887,935명	882,675명	879,676명
(전체 장애인대비 비율)	(35.2%)	(34.9%)	(34.8%)	(34.8%)
개정안에 따른 증가 (B-A)	395,154명	388,597명	386,224명	384,983명

주1): 현행(A)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개정안(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임.

주2): 위 통계는 수급권자이며, 실제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수급권자의 약 70%로 추정됨(소득 하위 7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용어 체계에 맞게 표현을 정비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1조 573억 원⁵⁾(국비 기준 7,084억 원,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 50%, 그 외 지방 70%)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계함.

□ 한편,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733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서미화의의원안	이수진의원안
① ‘중증장애인’ 개념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안 제2조제1호)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안 제2조제1호)

5) 기초급여 전액, 부가급여 전액 기준

2. 신청 간주 등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정비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발굴 책무를 신설하고,

공무원에 의한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며,

관련 조사·지급결정 및 금융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생략) ②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u>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u> <u>-----한다.</u>

현행	개정안
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삭 제>

현행	개정안
<u>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1.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u>금융정보</u>”라 한다) 2. 「<u>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u>신용정보</u>”라 한다) 3. 「<u>보험업법</u>」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u>보험정보</u>”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2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동의의 방법·절차----- -----.

현행	개정안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 -----제8조제1항에-----신청(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 -----

현행	개정안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의-----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⑤ ----- -----제4항에도-----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① ~ ③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④ ----- ----- -----제3항, ----- ----- -----.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등에----- -----.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⑦ (생략)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장애인연금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 제10조의2에 따른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발굴 조치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제3항),

②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안 제8조제2항 각 호),

③ 이 같은 신청 간주 시에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안 제10조제2항),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지급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연금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신청 역량의 한계,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상 행정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령, 빈곤, 돌봄 공백 등의 사정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생계·의료급여의 2026년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134만 3,773원 및 167만 9,717원⁶⁾인 반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224만원⁷⁾으로,

생계·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이미 선정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도

6)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 8. 1., 제정.]

7)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8.]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6-3호, 2026. 1. 8., 일부개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셋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장래에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상자에게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장애인 연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음.

□ 넷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가 선행되어 있다는 점에서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불필요한 유·무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조사 생략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 이해되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까지 곧바로 생략할 경우, 수급요건에 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후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장래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받는 절차로서, 신청서 제출 시점과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간주되는 시점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소득·재산, 가구 구성, 배우자 유무 등 수급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둘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 간주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개정규정을 단순히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라고 하기보다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으로 특정하고,

부칙 제3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신청 간주의 적용 시점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이라고 하기보다 실질적인 신청 간주 규정인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신청 간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 시행 전에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급 형평성 측면에서 법 시행 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9)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적용 대상 관련 조문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②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u>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한다.
<신 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 설>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u>	<삭 제>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④ ----- -----제3항, ----- -----.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등에----- -----.

□ 한편,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금융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소병훈의원안	이수진의원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의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발굴 및 필요한 조치 의무 부여(안 제3조제3항)
② 신청 간주 도입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신청 간주(안 제8조제3항 각 호)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모두 신청 간주로 규정(안 제8조제2항 각 호)
③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청 간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간주(안 제10조의2제4항)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
④ 조사 생략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사 생략 가능(안 제10조제2항)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사 생략 가능(안 제10조제2항)
⑤ 금융정보등 제공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제8조제4항으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	기존 제8조제3항의 동의 대상정보를 제12조제1항 각 호로 이관(안 제12조제1항 각 호)
⑥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부칙 제1조)	
⑦ 부칙 적용례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3조)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 관련,

-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확대 차원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함으로 찬성함.

*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④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할 기회 확대

- 다만,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는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23-42호)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3급 단일 장애인을 중증장애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국정과제 79-4에 따르면 3급 단일 장애인 연금 확대 시 기존 중증장애인과 3급 단일 장애인 간 급여액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 등에 관련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신청 간주 등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정비 관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동의함.

- 다만,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신청은 장애인연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 및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한편,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재산 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계·의료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므로 별도의 조사 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한 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희망 신청 시점과 수급자격으로 들어와 신청 간주되는 시점에 있어 소득·재산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연혁

-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개편('10.7.1.)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 경증장애수당은 유지
 -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상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10.7.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14.7.1.)
 - 「장애인연금법」 개정('14.5.)
 - ※ (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 원, (대상자) 소득 하위 63% → 소득 하위 70%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법」 개정('18.3.)
 - ※ (기초급여액) 20만 원 → 25만 원('18.9.)
 - 소득수준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③ 전체 수급자 ('2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22.1~)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
 -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수급자 : 34만 7,898명(수급률 70%, '25.12월 기준)

☐ 예산 : 국비 907,129백만원(서울 50%, 지방 70% 보조)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지체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4)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타. 안면장애

-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폐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폐색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